

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 감액적용 가능 안내

□ 외국인근로자가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입국 후 수습기간(3개월 이내) 동안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이 가능

※ 단, 실제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업무[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상 9 (단순노무 종사자)]이면 수습기간동안 10% 감액 적용이 불가능

최저임금법 제5조 2항

-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
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

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

-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"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"란 **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(단순노무 종사자)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**

□ 신규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(3개월 이내) 동안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을 위한 절차

① 워크넷 : 내국인 구인 노력 시 **단순노무 외 직종** 선택하여 구인

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내용 작성

*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작성 시 [구인사항 - 모집직종]란에 실제 업무에 따라 직종 기재

* 신청서상 [근로조건 - 임금 및 지급방법 - 수습기간 중 임금]란에 활용 내용 기재

※ 참고사항

-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업체의 수습기간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

□ 적용 예시

- 기계조작을 통한 가공 등 생산에 직접 참가하면서 보조적으로
작업현장 정리·청소업무를 수행

⇒ 단순노무업무로 보지 않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% 감액
지급 가능

- 제품 단순 선별, 상표부착, 단순 조립, 운반, 적재, 작업현장
정리·청소, 숙련근로자의 보조업무 수행

⇒ 단순노무업무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100% 지급

※ 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(1666-5916)

□ 대분류의 대분류상 9(단순노무 종사자)는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

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

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

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

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

95 가사,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

99 농림,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

□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은 다음의 4개 세세분류로 구성

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

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

93001 수동 포장원

93002 수동 상표 부착원

93003 제품 단순 선별원

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

□ 주요 업무

- 원재료를 운송한다.
- 원재료 및 제품들을 적재, 하역, 분류, 확인 및 무게를 단다.
- 컨베이어, 분쇄기, 톱 및 가공 기계와 같은 기계에 원료를 공급한다.
- 제품을 분류하고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으로 조립한다.
- 작업장 및 설비를 청소한다.
- 숙달된 근로자들을 보조한다.

□ 직업 예시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• 수동 포장원 | • 수작업 라벨 부착원 |
| • 수작업 상표 부착원 | • 부속품 단순분류원 |
| • 완제품 단순분류원 | • 제품 운반원 |
| • 단순 조립원 | • 수공 코일 권선원 |
| • 권선공 | • 인형 눈 붙이기원 |
| • 구슬 꿰기원 | • 종이봉투접합원 |
| • 봉투만들기원 | • 낚시 실 꿰기원 |
| • 고리끼우기원 | |